

십대여성인권센터 해외연수 보고

스웨덴 / 영국

2017. 07. 09 ~ 07. 16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1. 스웨덴

외무부 무임소대사 면담

행정위원회

ECPAT Sweden

Freethem Sweden

The girl zone

Talita Sweden

2. 영국

Children's Society

NSPCC

스웨덴 - 외무부 무임소대사 면담

1. 주요 연혁

- 스웨덴은 성매매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착취이자 인신매매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이미 사회 전반에 조성되어 있었음.
- 2016년 외무부에 인신매매 및 성착취 전담 특임대사직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속의 Per-Anders Sunesson(반인신매매 활동 경력)을 임명함.
- 외무부는 인신매매 담당 '부서'가 조직되어 있다기 보다는 담당자 '무임소대사'가 스웨덴의 성착취 및 인신매매 규제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해외에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 문제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함.
- 스웨덴 정부가 성매매, 인신매매 이슈를 주도하여 성매매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남녀 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로 생각하여 여성과 아동의 취약한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무부의 협조를 얻는 업무를 담당함.

스웨덴 - 외무부 무임소 대사

3. 주요 업무

- 스웨덴 국외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 이주자와 난민의 성매매 예방, 원정성매매 대책, 스웨덴 성매수 처벌법 관련 대외협력 업무, EU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무임소대사를 임명하여 특히 아동의 학대, 착취, 인신매매, 그밖의 모든 폭력과 고문 종식을 위한 외교 활동을 함.
- 최초로 1999년 성매수자만 처벌, 성판매자는 불처벌하는 '성매수 처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2015년에는 형법에 포함되고 16번에서 6번으로 우선순위 변경되어 성폭력 장에 포함 => 성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했던 입법제도(북유럽 여러 국가,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의 일부에서 채택중)로 평가되고 있음.
- 성매수의 예방 및 처벌과 피해 경험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스웨덴 - 외무부 무임소 대사

3. 주요 업무

- 스웨덴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6세 이하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6세 이상의 성매매는 성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음.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이 자해를 하거나, 장기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을 따로 지원하는 법이 있지만, 성매매와 관련하여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과 특화된 프로그램은 없었음.
- 스웨덴은 아직 IT 관련 법은 없고 성구매자 검거를 위한 사이버상 경찰 TF팀이 있음.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를 인지해서, 성구매자인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하고, 문을 열어주면 주소를 알아내고 성매매 제안을 취소한 뒤, 잠복해서 구매자를 검거함.

4. 성과

- 성매수 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반으로 감소하고 남성의 72%이상이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인식의 변화를 확인 가능함. 판매자는 피해자로 보호를 받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경찰, 사회복지사 등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해 짐. 이를 통해 피해자 불처벌의 중요성이 확인 가능함.

스웨덴 - 외무부 무임소 대사

6. 사진



스웨덴 - 행정위원회

1. 연혁

- 1964년 설립

- 중앙정부의 행정업무를 지방에서 시행하면서 지방정부 및 의회, 경찰, 이민국, 사회복지과, NGO 등과 협력하고, 특히 성구매 처벌 및 피해 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중앙에서 파견된 National Coordinator가 여러 유관기관의 일선 실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과 활동을 조율하여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짐.

2. 주요 업무

- 국가 업무 조율: 성매매와 인신 매매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NGO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 강화를 촉진하여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재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한 복귀 조율을 하고 있음.

스웨덴 - 행정위원회

- 성매매와 인신매매 담당 전국비서관(스톡홀름 행정위원회 성구매 규제 National Coordinator 겸직)은 성매매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규제 대책을 조율하는 정부 위임권을 갖고 있음. 스톡홀름 행정위원회 성구매 규제 전국 코디네이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스웨덴에서는 NGO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원하기 때문임. 실제로 정부 주도의 성매매 피해경험자 지원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부처들과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주관하고 있었음.

스웨덴 - 행정위원회

4. 사진



스웨덴 – ECPAT Sweden

1. 주요 연혁

- 1996년 설립 / 75개국 80여개 회원단체로 구성

-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정부 주관으로 UNICEF와 아동인권을 위한 NGO 단체와 함께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를 개최(122개국 참석).
- 17개국 50명 이상의 법집행 공무원들이 모여 성착취자들을 모니터링, 체포 및 구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검토하고 전략들을 다듬음.
- 상업적 아동성착취가 세계 여러 지역에 존재하고 증가추세임이 명확해지면서 지역운동을 넘어 전세계 NGO로 발전함

2. 비전

- 아동들이 어디에서든지 모든 형태의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스웨덴 – ECPAT Sweden

3. 주요 업무

- 모든 형태의 아동 성착취(아동섹스관광, 아동 포르노, 아동성매매) 예방 및 근절
- 다른 NGO들이나 기업들과 협력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에 대응
-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기업 임원들에게 아동성학대 수요와 반대 안내 및 장려 활동: 스웨덴 입법활동에 아동 보호 강조, 위기 아동들에 대한 관심, 여행사를 통해 아동 성매매 문제에 대해 승객들과 직원들에게 안내, 은행과의 협업으로 아동 성학대 자료 온라인 구매에 대한 지불 금지
-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성매매 반대행동 방법에 대한 대중홍보: 아동성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ECPAT hotline으로 신고, 아동 성매매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선택
- 포르노 등 유해사이트 차단 진행: 해당 사이트 접속시 접속 여부를 재확인하는 화면으로 전환(귀하께서는 아동 포르노자료가 포함된 정보에 접근하려고 한다. 이것은 스웨덴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라는 안내와 형법조항, 신고 전화번호가 함께 소개됨.

스웨덴 – ECPAT Sweden

5. 사진



스웨덴 – Freethem Sweden

1. 주요 연혁

- 2010년에 설립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청년 자원 단체(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4개국 연대)
-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 노동착취의 수요근절 활동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됨.

2. 주요 업무

- 아동 인신매매, 성매매, 포르노 근절을 위한 청년 자원활동 조직: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현안임.
- 학교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나라의 피해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며 현재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행사 / 강의 / 홍보 / 활동 팀 구성 / 모금 및 베희마켓 운영 (긴급 숙박 시설에 돈을 기부) / 영화 &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스웨덴 – Freethem Sweden

4. 사진



스웨덴 – The girl zone

1. 주요 연혁

- 1998년 청소년상담 콜센터로 시작하여 다양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으로 확대하였고 정당/종교/문화/민족/섹슈얼리티와 무관하게 지원함.
- 회원 300명, 자원활동가 200명, 상근가 12명

2. 주요 업무

- 1) 정신건강 질환 예방을 위해 1:1 대화 및 기회 제공: Bigsister로 불리우는 자원활동가들이 '들어주기(Listening)' 활동
 - 콜 사업(General chat): 자원활동가(Bigsister)가들이 고민의 주제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청취만 함.
 - 멘토링 프로그램: 자원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을 월 1~2회 정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취만 하고 진단은 하지 않도록 함.
- 2) 자원활동가 교육: 상근자들이 자원활동가(Bigsister) 교육/감독을 통해 자원활동가들이 청소년상담을 진행함
- 3) 도움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이 희망할 경우 적합한 심리치료를 도와주기도 함

스웨덴 – The girl zone

5. 사진



스웨덴 – Talita

1. 주요 연혁

- 2004년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을 지원하는 기독교 NGO로 설립되어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
- 탈리타 루마니아 설립(2012년), 탈리타 아시아(몽골) 설립(2013년)

2. 주요 업무

- (1) 단기 프로그램: 정부에서 연계한 피해여성들을 직접 지원 및 보호
- (2) 장기 프로그램: 4단계(안전한 주거제공, 트라우마 치료, 교육, 자활(독립생활, 노동으로의 전환)를 1년 4개월간 운영
- (3) 경찰, 스톡홀름 행정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음식과 의복 지원, 안전한 거처 제공)
 - 피해자 중 80%가 외국인(루마니아, 나이지리아 난민이 대부분/‘더블린 조약’에 의거하여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쉼터 이용 가능)인데 이 경우 귀국 지원 혹은 스웨덴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4) 정상적인 사회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탈리타 활동가가 친구처럼 다가가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멘토 프로그램도 운영중

스웨덴 – Talita

2. 주요 업무

- 성구매가 여성에 대한 범죄임에 주목하는 페미니스트 방식을 중시하고 있었고, 소위 자발적 성매매라고 표현되는 경우에도 온전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과거의 트라우마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지원하고 있음.

스웨덴 – Talita

4. 사진



스웨덴 – 전체 합의

1. 스웨덴의 성구매 처벌법은 구매자를 확인하여 징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성구매'가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수반하는 인권에 반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가 공유되어 있음.
2. 스웨덴 방문 기간 중 만났던 모든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매매"가 아닌 성착취이자 인신매매라고 보고 있었으며 법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구매 행위는 성착취와 인신매매 범죄로 처벌받고 있음. 또한, 포르노그래피 특히 아동 포르노는 현재 성착취 및 인신매매 문제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겼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응중임.
3.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 인신매매 분야를 정부 각 부처 외무부, 사회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에서 모두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2016년에 스웨덴 정부대응계획(National Action Plan)이 수립됨.

영국 – The Children's Society

1. 주요 연혁

- 1881년 영국성공회에 기반하여 아동빈곤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 1995년 아동성매매 관련 출판: 아동성매매를 주제로 영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상세보고서를 출간함. 그 결과, 2000년 정부에서 경찰은 아동을 범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안내지침을 발표함.
- 2003년 이후 아동이 불이익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활동: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일선 서비스와 자원활동을 통해 아동 빈곤을 추방하고, 가족 부채와 청소년 가장, 가출 청소년 보호, 성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주요 업무

- 남녀 아동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지만, 성폭력은 여자아이에게만 일어난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남자 아이들에게 포커싱하는 프로젝트도 있음.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 하지 않거나 숨기게 되는 상황이 더 많아 더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음.

영국 – The Children's Society

2. 주요 업무

- 교육프로그램 운영: 의료/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폭력 피해 확인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반응하고, 아동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교육함.
- 정책 건의: 중앙 및 지방 의회에 빈곤, 성착취, 난민 및 이주의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정책과 입법 건의, 검토, 제안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정보 제공함.
- '심각하게 중간에 끼인' 캠페인 중: 현재 16세~17세를 위한 활동으로 영국 법에서 이들이 곧 성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확인함.

2015년-2016년 성과: 전국 아동 센터와 위기 청소년 서비스를 통해 18,000명의 10~18세 취약 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함. 성착취 피해아동, 정신/정서 건강에 문제 있는 아동, 실종 아동, 약물 오용 아동, 돌봄 서비스 받지 못하는 아동 5,055명의 아동 청소년 지원=> 73%의 청소년들이 위의 5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함.

영국 – The Children's Society

3. 합의

-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16~17세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 점, 예방 차원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온라인 성착취/SNS를 통한 아동폭력 발생시에는 대응 방법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은 점, 심리상담이 부족한 점, 전문가를 위한 교육이 부족한 점, 다양한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회의가 부족한 점을 관계자는 언급함.
- 영국 내 온라인 성착취/SNS를 통한 아동폭력 발생시, 대응 방법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아직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현재는 문제의식만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IT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일상화 되어 있어서 우리 청소년만큼 이용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먼저 겪고 있음.
-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전국에 14개(서울에 5개)가 운영중이나, 영국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쉼터가 존재하지 않았음. 이는 별도의 쉼터가 없어도 사회복지 시스템 상 보호가 가능하거나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낙인이 적어 분리하여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영국 – The Children's Society

4. 사진



영국 – NSPCC

1. 주요 연혁

- 1884년 설립된 영국 최대 아동 자선기관으로 후원금으로 운영됨.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
- 2016년~2022년 사업계획: 5년간 5백만 아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위기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발언 지원, 어른의 아동학대 예방행동 지원, 학대 경험 아동 피해 지원,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5가지 목표가 있음.

2. 주요 업무

- 1) 직접 사업을 하기 보다는 주로 Childline과 같은 영국의 아동보호기관들을 지원하고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함(Childline: 2016년 아동 청소년 상담 세션 295,000회, Helpline: 아동 복지 관련 상담 66,000회, 14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250회 위탁교육 실시)
- 2) 학대 예방 캠페인
- 3) 정당 상관 없이 학대 및 소외 아동을 위한 의정 활동
- 4) 조사 연구 활동: 학대 아동 사례 소개, 연례 연구 보고서 출간

영국 – NSPCC

2.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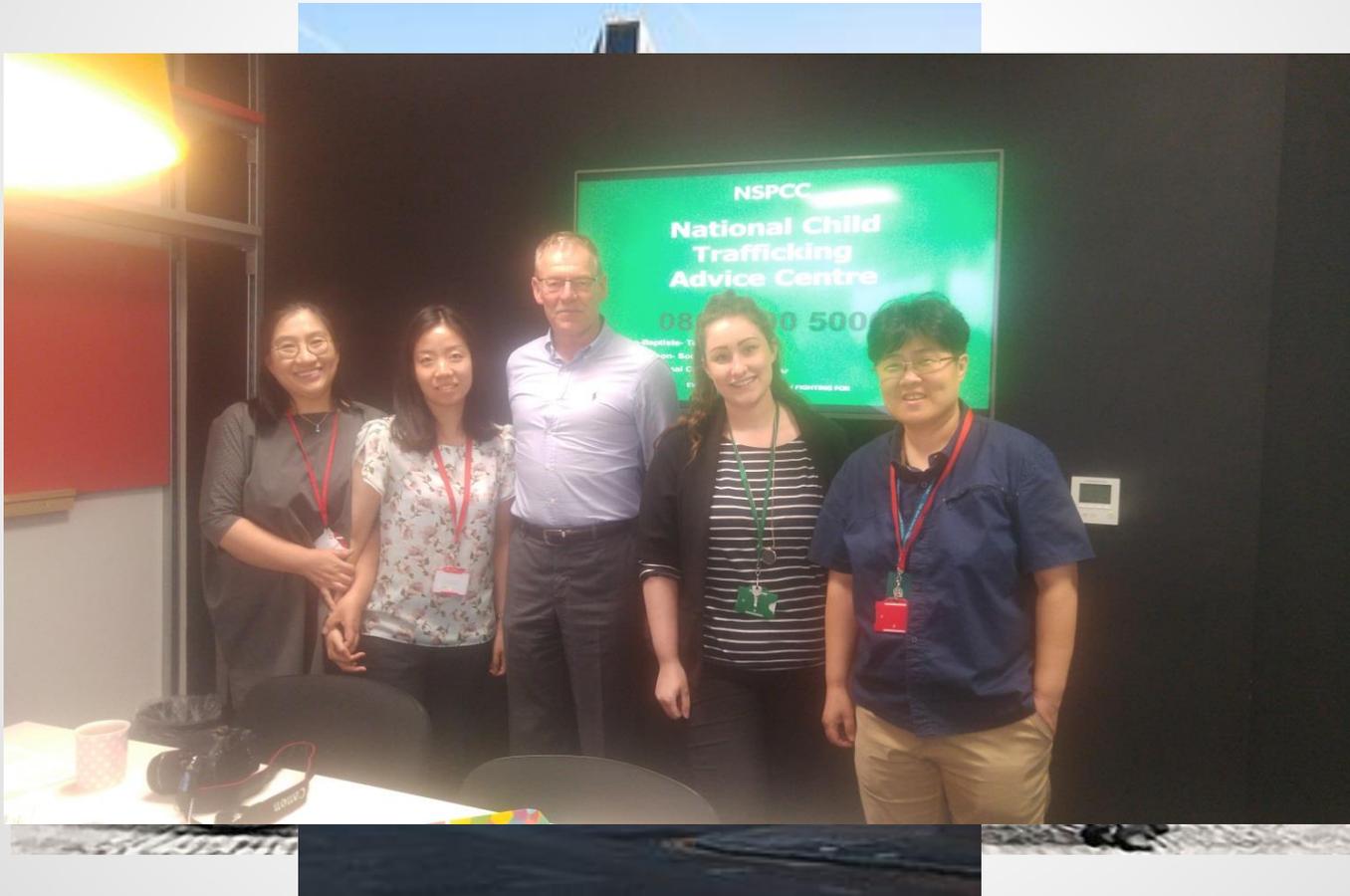
5) NSPCC에는 40년동안 경찰로 일한 후 NCA(National Crime Agency)에서 파견되어 일하는 전직 경찰이 근무: 직접 아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의 전문가를 지원함(관련 자료 제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6) 전화 상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아동을 최대한 잘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정책에 전략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아동보호법의 관점에서 활동(불법 체류의 경우 포함)하며, 한 아이를 두고 working group이 있음

7) 모든 지방정부에 베이스 패널(사회복지사, 경찰, 성 보건, 의료, 정신건강, 아동보호기관, NGO 등) 구성: 월 1회 회의 => 주요 목적은 한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이며, 아동을 위한 제안사항과 각 기관의 역할을 분장하는 계획 수립을 함. Children's Act라는 법에 근거하여 협력 가이드라인(Working Together)이 있고, 이에 따르면 한 아동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영국 – NSPCC

3. 사진



영국 - 전체 합의

3. 합의

1) 영국 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 및 법령

- 성매매 정책: 지역에 따라 세부 시행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나 성매매 업소운영은 불법임. 한 장소에서 여러명이 성매매를 하면 불법이고, 거리성매매나 성구매 역시 불법임. 성매매업소의 소유자나 조정자는 처벌되지만, 판매자는 처벌받지 않음. 과거에는 구매자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처벌이 가능함.
- 2013년 법령에 아동성매매라는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 그전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도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구를 완전히 변경하여 성착취 피해자로만 인식하게 됨. 이와 같은 법률개정에 대한 영국 NGO 들의 노력은 1995년부터 본격화되었고, 2005년 영국의 한 지역인 다비*에서 벌어진 사건이 전환점이 됨.

영국 - 전체 합의

3. 합의

* 다비 사건: 다비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 당시 거리에서 노는 여자 청소년들이 담배, 알콜, 마약, 성인들과의 성매매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음. 그런데 그 여자청소년들과 일하던 NGO 활동가 실라 테일러가 그것이 아니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루밍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제기함. '실라 테일러'는 경찰의 인식을 돌리기 위한 일을 시작하였고, 비행청소년이 아닌 성착취 피해경험자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시작함. 여기에는 아주 많은 자원이 투자되었고, 여자 청소년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재판과정에서 진술함으로써 그루밍 프로세스에 의해 성착취가 일어났다는 판결을 받음.

영국 - 전체 합의

3. 합의

- Modern Slavery Act 2015: 법률적으로 “아동 성매매” 라는 단어 자체를 전면 삭제하고 “아동 성폭력, 성착취” 로 보는 관점으로 단어 변경함.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영국 전반에서 18세 이하를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고 중대 범죄로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임. Modern Slavery Act를 통해 피해 아동은 자신을 대신하여 옹호해 줄 수 있는 성인을 지정 가능함(변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 지역에 따라 선호도는 다름.
- 디지털 경제법: 온라인 상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서는 그루밍, 성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미지물을 아동에게 전송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취급되지만,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어떤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
- 그루밍법 관련: 영국경찰청이 운영하는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에는 아동성매매 피해 영상에서 성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부서가 있음. 그들이 어느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범죄의 단서를 알게 되면 (National Crime Agency)에 알리고 NCA 에서 그루밍 범죄자를 체포함.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자체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기만 가져도 처벌함.

영국 - 전체 합의

3. 합의

2) 피해자로 인식되는 과정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잘 발달함.

- 섹션 2-D 에 의해 식별함. 경찰,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의 비영리 기관에서 참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체크하게 되어 있음.
- 이를 통해 피해자로 식별되면 아동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전문가 1명이 연결됨. 이주민인 경우, 법률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 등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고 이민절차 문제는 별도로 지원받음.
-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를 구속하는데 도움이 됨: 형량은 인신매매와 성착취는 다르며, 범죄정도와 횡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만 13세 이하 성착취 종신, 만 14세-15세 성착취 14년, 16세-17세 성착취 7년 정도로 기소율은 16% 정도이나 실형 선고는 이보다 낮음.

감사합니다.